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9. 3.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 
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행정문화국 마을자치과)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20호
- 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공유시설 무상사용(안 제4조)
- 다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표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,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. . ~ . . 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금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규정 (안 제3조)
  -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.
- 2) 공유시설 사용 (안 제4조)
  -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」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.
- 3) 보조금 신청 및 정산사항 규정 (안 제5조)
- 4) 표창 규정 (안 제6조)

## 다. 검토결과

-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·질서·화합의 이념으로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,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를 창립하였고, 1991년 12월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을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 바르게살기운동 금천구협의회도 위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사업비를 지원받아 불우이웃돕기행사,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,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익사업의 추진을 권장·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붙임 : 1. 관련법령 1부. 끝.

## 관계법령

###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국유시설·공유시설의 사용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·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###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[ 약칭: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 ]」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2조(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하부조직)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협의회
2. 시·군·구 협의회
3. 읍·면·동 위원회